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- 가. 제안이유
 -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7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- 본 조례안은
 -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전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7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, 이는 양성평등축진을 위한 정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근거한 것임.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9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,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7조의2)

1) 본문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2. 9. 15.~10. 5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 본문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